

1950년대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분쟁과 결과

— 「독도표석」을 중심으로—

이 소 리*

(e-mail : soundlee@korea.kr)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 | 3. 한일 간의 독도표석 공방전 |
| 2. 최초의 독도표석 | 3.1. 광복 후 일본의 독도 인식 |
| 2.1. 최초의 독도 영토 표목 | 3.2. 일본의 독도침범과 일본령 표목 설치 |
| 2.2. 독도조난어민위령비 | 3.3. 독도에서 사라진 일본령 표목 |
| | 4. 나가기 |

キーワード : 標石(Tombstoner), 標識(Signpst), 領土標石(Territorial Tombstone), 平和線(Syngman Rhee Line), マッカーサーライン(MacArthur Line)

1. 들어가기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현의회는 소위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¹⁾를 제정하고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이에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경상북도(이하, ‘경북도’라 한다)는 1989년 10월에 체결한 시마네현과의 자매결연 관계를 15년 6개월 만에 파기하고, 즉시 독도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일본으로부터 독도를 지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서둘렀다.

그 일환으로 경북도는 당해 8월 15일 광복 60주년을 기념하면서, 독도에 세워졌다가 멸실된 독도 표석을 복원하고 재건립하였다. 경북도가 복원한 표석은 1950년대에 건립되었던 ‘독도조난어민위령비’, ‘한국산악회의 독도표석’, ‘대한민

* 경북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일본학

1)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불법 편입 한 시마네 현 고시 100주년을 계기로 시마네 현민이 하나가 되어 영토권 조기 확립과 일반 국민들에 대한 여론 환기를 위해 시마네 현 조례 제36호로 의원 제안에 의해 제정·가결되었다.(2005.03.16.)

국 영토표석' 3점이다. 한국정부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대한민국 영토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도발 행위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한 일련의 대응 조치로서 경북도는 1950년대에 건립되었던 독도 표석을 복원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경북도가 복원한 3점의 표석을 중심으로 1950년대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분쟁과 그 결과를 통해, 독도 표석이 갖는 내재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위의 3점의 표석들이 언제, 누가, 왜 세웠는지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1차적으로 독도에 표석을 세운 1950년대의 역사적·정치적 상황을 구현하고, 2005년 독도에 표석을 복원해야만 했던 독도 상황을 제고함으로써 독도의 미래에 대한 단초를 마련 것에 있다.

2. 최초의 독도표석

독도에 세워진 표석²⁾에 관해서 이정훈은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독도에 먼저 영토 표석을 세운 것은 한국이었으며, 미 군정기인 1947년 8월 29일 조선산악회가 '朝鮮慶尙北道鬱陵郡南面獨島(조선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독도)'라고 쓴 표석을 세웠다고 발표했다.³⁾ 이후 정병준은 조선산악회가 독도에 표석을 설치한 것은 1947년 8월 20일이었으며, 표석에는 '朝鮮鬱陵島南面獨島(조선 울릉도 남면 독도)'라고 쓰여 있었다고 정정하였다.⁴⁾ 이때 정병준은 사진자료까지 제시하며 이정훈의 주장을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영토표석이 설치되는 배경까지 자세하게 밝혔다.

본 장에서는 먼저 1947년 8월에 어떠한 경위로 최초의 표석이 독도에 세워졌는지를 선행 연구를 토대로 개괄한 뒤, 2005년 8월에 경상북도가 재건립했던 '독도조난어민위령비'의 건립 상황과 배경을 살피려 한다.

2) 독도에 처음 세워진 표식(標式)은 재질이 나무로 된 것이었다가 나중에 화강암 등의 돌로 바뀌었다. 이 글에서는 재질이 나무일 때만 표목이라 하고, 총칭적인 의미일 때는 표석이라고 했다.

3) 이정훈(2005.07.19.) 「자연보호 독도, 역사가 버려져 있다」 『주간동아』 494호, 동아일보사, pp.92-94.

4) 정병준(2010) 『독도 1947』 돌베개, p.139.

2.1. 최초의 독도 영토표목

먼저 1947년에 독도에 영토 표석이 설치된 경위는 살펴보자.

한국은 광복 직후부터 외세에 의한 남북분단 등 나라의 존폐를 좌우하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영토 동단에 있는 독도에까지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었다. 그러다가 한국이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광복 후에도 일본 어민들이 여전히 독도와 독도 주변해역에 나타나 우리 어민들과 충돌하면서부터였다.

1947년 4월, 독도에 불법 상륙한 일본 어민들이 한국 어민에게 충격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6월 20일 『대구시보』에 보도되면서 한국인 또는 한국 정부의 독도 인식과 대응 방향을 형성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당시 과도정부는 독도 조사를 계획하고 그 해 8월 독도조사단을 파견한다. 4명의 정부 독도현지조사단이 구성되었고, 조사 주최는 민간단체인 조선산악회가 맡게 되었다. 과도정부의 후원 하에 조선산악회는 남한 내 각 분야의 최고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울릉도·독도학술조사대’를 꾸리고 8월 16일부터 28일까지 처음으로 독도 조사를 실시했다.⁵⁾

조사단이 독도에 도착한 것은 8월 20일 오전 9시 40분경이었고 오후 3시 30분경에 독도 조사가 종료되었다. 이 때 독도의 동식물 표본 채집, 목측에 의한 측량, 섬의 지형 파악, 사진 촬영 등이 행해졌으며, 조사대 귀환 이후 울릉도·독도조사 보고서와 신문 보도 등에서 독도의 위치, 면적, 지질, 기상과 해류, 생물, 식물, 역사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졌다.⁶⁾ 이것을 계기로 독도의 식물상, 독도의 명칭에 대한 연구, 독도의 역사 등 주요 정보와 연구가 나오게 되었으며, 이후 한국의 독도에 대한 인식, 정책, 연구의 중요한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과도정부와 조선산악회 공동명의로 표목을 동도에 설치한 것이다. 조사대는 2개의 표목을 설치했는데 오른쪽 표목에는 세로로 ‘朝鮮鬱陵島南面獨島(조선 울릉도 남면 독도)’라고 썼고, 왼쪽 표목에는 ‘鬱陵島.獨

5) 『서울신문』(1947.08.22.), 조사단 규모는 총80여 명. 중앙정부의 독도조사단 4명, 경상북도 2명, 제5관구 경찰직원 등 관계공무원과 학술조사대원. 조사대는 본부와 학술반으로 나누었고, 학술반은 다시 8개 분과로 나누어, 사회과학A반(역사,지리,언어 등)10명, 사회과학B반(생활실태) 11명, 동물학반 6명, 식물학반 9명, 농림반 4명, 지질광물반 2명, 의학반 8명, 보도반 8명 등 조사대원 총 63명.

6) 앞의 책, 정병준(2010) p.168.

島學術調査隊記念(울릉도·독도 학술조사대 기념)'이라고 썼다. 최초의 독도조사에서 독도가 한국령임을 알리는 표석을 설치한 사실로 보아, 조사활동의 주요 목적이 독도영유권을 확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조사단에 정부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등 정부 주도하의 연구 활동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상과 같이 독도에 최초로 세워진 영토 표석은 일본인의 독도 불법점거와 총격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의 결과이며 산물이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우리 민족에게 일본에 의한 우리 국토 유린을 허락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가 독도 표석으로 나타난 것이다.

2.2. 독도조난어민위령비

독도에 두 번째로 표석이 건립된 것은 1950년 6월 8일 경북도에 의해 건립된 '독도조난어민위령비'이다. 1948년 6월 8일 오키나와(沖繩)에 기지를 둔 미 공군 B-29기의 폭격으로 인해 독도 인근해역에서 미역 채취를 하던 다수의 한국 어민이 사상했다. 당시 독도에는 울릉도 본섬과 강원도에서 온 어민들이 미역 등을 채취하고 있었다.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위령비의 이면에는 “사망 및 행방불명 14명, 중경상 6명, 선박 파괴 4척”이라고 적혀있지만, 후에 홍성근은 현지조사와 관련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망 및 행방불명 16명, 중상자 10명, 약 20여 척의 크고 작은 선박이 침몰하거나 파손되었다고 밝혀,⁷⁾ 위령비에 적힌 피해보다 컸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왜 미 공군이 독도에서 폭격을 훈련을 한 것인지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당시 미국은 극동지역의 대소봉쇄정책 일환으로 독도폭격연습장 활용이 필요했었다.⁸⁾ 미 극동공군이 1947년 9월 16일 연합군최고사령부 각서(SCAPIN) 1778호를 통해 독도를 공식적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한 상태였는데, 이 사실이 일본에는 통보되고 한국에는 통보되지 않았던 것이다.

미 공군이 독도를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배상을 요구하였다. 미 극동항공대 사령부는 6월 17일에서야

7) 홍성근(2020) 「1948년 독도폭격사건의 인명 및 선박 피해 현황」 『영토해양연구』 19, 동북아역사재단, pp.44-45.

8) 김태우(2011) 「1948년 미 공군에 의한 독도폭격의 전개양상과 군사정책적 배경」 『동북아역사논총』 32호, 동북아역사재단, p.405.

공식 성명서를 통해 오키나와 주둔 미 전투기의 폭격 연습을 하면서 2,300피트의 고도에서 작은 어선들을 회색암석으로 오인하고 폭격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⁹⁾ 또한 6월 20일에는 미군 당국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의 폭격 연습을 일체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독도 폭격 사건은 1947년 독도 조사의 중심인물이었던 『조선일보』 홍종인에 의해 중점 보도되면서 독도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을 고조시켰고, 독도 폭격사건의 유가족들에 대한 성금과 위문품이 전국 각지에서 답지했다.¹⁰⁾ 1947년 울릉도·독도학술조사대의 독도조사로 시작된 한국인의 독도 인식은 1948년의 독도 폭격사건으로 인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공감·확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지 만 2년이 지난 1950년 6월 8일 오전 10시에 독도에서 조난어민위령비의 제막식이 거행되고 위령비가 세워지게 되었다. 건립 후 작성된 보고서¹¹⁾에 나타난 위령비의 규격은 비신이 가로 1척 4촌, 두께 6촌, 높이 4척 5촌이며, 좌대는 가로 2척 4촌, 세로 1척 2촌, 두께 1척 6촌이다. 제막식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미 군정에서 조난어민들에 대한 배상이 완료된 후 치러졌으며, 중앙부처의 재무부·공보처 등 각 기관의 관계자, 그리고 당시 조재천 경북도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난어민 위령제과 위령비가 건립되었다. 이 때 울릉도 주민을 대표하여 홍재현옹이 조사를 낭독했고,¹²⁾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경북도지사가 제문을 낭독하고 위령비에 헌화한 사진이 남아 있다.

‘독도조난어민위령비’는 한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 과도기에 발행한 미 군정기에 의한 독도 폭격사건에 대한 결과물이다. 사건발생 지역이 분명한 한국령 독도였으며, 한국 어민이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보상 주체인 미 군정에 진상규명을 요구함으로써¹³⁾ 독도가 한국령임을 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의 처리경과와 관련하여 일본은 단 한차례도, 단 한마디도 독도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

9) 『서울신문』 (1948.06.18.)

10) 『조선일보』 (1948.06.19.)

11) 경상북도(1951) 「독도에 관한 조사의 건」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BA0182403-1)

12) 홍순철(1997) 『이 땅이 낫 땅인데』 도서출판 해안, p.16.

13) 국회사무처 「제1회 국회속기록 제11호」 (1948.06.15.) 『제헌국회속기록(1948.04.30.~1948.09.08.)』 제1권, pp.145-150.

위령비의 이면에 “어민들의 희생을 위로하는 외에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함에 대하여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재천명하는 점에 있다.”고 건립 의도를 밝히고 있는 점에서, 영토 표시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영토에서 한국 어민과 어선들이 재난을 당하자, 한국 정부가 재난 당한 이들을 위령한 사실은 독도의 관리 주체를 분명히 보여주는 주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본 정부는 1947년부터 1951년에 이르기까지 미 군정 또는 한국 정부에 대해 독도영유권과 관련한 어떠한 의견 표명이나 항의 표시도 없었다.

3. 한일 간의 독도표석 공방전

3.1. 광복 후 일본의 독도인식

한국 국민이 독도에 대한 인식을 각인한 것이 1948년 6월에 발생한 미 공군에 의한 독도폭격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일본 국민이 독도를 제대로 인식하게 된 것은 1952년 1월에 한국 정부가 공표한 ‘평화선’¹⁴⁾ 선언이었다. 평화선은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 간의 수역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한 해양 경계선을 지칭하는데, 영역 안에 독도를 포함시키자 일본 정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 정부가 1952년 1월 18일 ‘평화선’을 발표하자, 일본 정부는 1월 28일, 외교구상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항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가 2월 12일자로 반박 문서를 보내면서 한일 간에 각서 외교전이 시작된다.¹⁵⁾ 이후 1965년 말까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 앞으로 보낸 구상서는 33회,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 앞으로 보낸 구상서는 27회에 달했을 만큼 외교 공방전이 치열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일시적 소강상태가 있었던 시기는 있었지만, 오늘날까지 일본은 끊임

14)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발표된 ‘인접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에 의해 확정된 해양 경계선을 지칭. ‘평화선’이라는 명칭은 이승만 대통령의 1952년 2월 8일 “획정선을 설치하는 주목적이 양국 간의 평화 유지에 있다”는 담화에서 비롯됨(박진희(2006) 「제1공화국 시기 ‘평화선’과 한일회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7, p.298.) 일본은 이를 ‘이승만 라인’으로 부르고 있음.

15)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편(2012) 『독도문제개론』 p.43.

없이 독도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평화선에 대한 한국의 주장은 평화선을 설정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일본에게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제2차 대전 이전 세계 최대의 어획고를 자랑할 만큼 수산업이 발달하여 주변 국가뿐 만 아니라 태평양 연안까지도 남획을 하고 있었으므로, 2차 대전 종료 직후부터 연합국최고사령관(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 SCAP)은 일본 주변 해역에 어업한계선을 설정하고 일본 어선의 어로 활동 범위를 제한했다¹⁶⁾. 연합국사령부가 일찍부터 맥아더라인을 설정하며 일본어선의 활동을 제한했지만, 패전 후 식량난에 허덕이던 일본 정부는 어로활동 영역의 확장을 요구하게 된다. 1946년 6월 22일 제2차 맥아더라인이 확장되고 나서는 한반도 연안으로 침입 횟수가 늘어났으며, 1949년 9월 19일 제3차 확장이 실시되고부터는 예사로 침입했다. 사태가 점차 악화되자 1949년 6월에는 남해안 일대의 어민대표들이 부산에 모여 맥아더라인 침범을 규탄하는 어민 쫓기대회를 갖고 일본의 불법어로를 맹렬히 비난하고 규탄했다.¹⁷⁾ 국회에서도 같은 해 6월 13일 황병규 외 8명의 의원 명의로 맥아더라인 확장을 반대하는 긴급 동의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일본 어선들은 1950년대에 들어와서도 맥아더라인 침범을 늦추지 않았고, 한국의 6.25전쟁 중에는 절정에 이르렀다. 일본 어선에 의한 피해가 잇따르자, 1951년 4월부터 8월 15일에 걸쳐서 제주도와 흑산도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일대 어민 대표들이 부산을 중심으로 한 주요 도시에서 맥아더라인 침범을 규탄하는 어민 쫓기대회가 열렸다. 규탄 내용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조인된 후에도 맥아더라인은 그대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구호도 포함되어 있었다. 연합국과 패전국 일본과의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1년 9월 8일에 조인되었다. 일본 어선의 어로 금지선 역할을 해오던 맥아더라인마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이 되면 폐지된다는 것을 일반인도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맥아더라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3일전인 1952년 4월 25일 폐지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 한국 정부는 한일 간의 어업 분쟁을 방지하고 한국 어업

16) 당시 연합국최고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의 이름에서 유래. 1945년 9월 27일 최초 지정 후, 1945년 11월 30일(1차 확장), 1946년 6월 22일(2차 확장), 1949년 9월 19일(3차 확장) 개정됨.

17) 지철근(1979) 『평화선』 범우사, p.97.

의 생존 도모하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해야만 했다. 지속적인 생산성을 유지함은 물론 한반도 및 도서에 인접한 대륙붕 등에서 발견될 자연광물까지 이롭게 보호·보존하기 위한 주권 행사를 하기 위해 평화선을 선포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근래 일본 외무성이 제작한 다케시마 홍보자료¹⁸⁾에도 잘 나타나 있다. 1952년 1월 한국은 일방적으로 평화선을 설정하고, 그 영역 내에 독도를 포함시킨 이후 현재까지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일 간의 독도문제 출발점을 한국의 평화선 설정에 두고 있다.

3.2. 일본의 독도침범과 일본령 표목 설치

한국 정부의 1952년 1월 평화선 설정에 대해 일본 정부는 외교구상서를 통해 반박하는 등 크게 반발을 했지만, 정작 독도를 본격적으로 침입하기 시작한 것은 1953년 5월부터였다. 이는 1952년 7월 26일 미일합동위원회가 독도를 미군폭격연습장으로 지정했기 때문이었다. 1953년 3월 19일 독도가 미군 폭격연습장에서 해제되고, 일본 외무성이 이를 5월 14일 관보에 공고한 지 2주일 뒤인 5월 28일부터 일본은 공세적으로 독도를 침입해 왔다. 1953년 일본의 독도 침입과 관련해서는 시마네 현의 총무과 자료와 당시의 문서, 신문자료 등을 정리한 선행연구¹⁹⁾에서 그 대략이 밝혀져 있다.

1953년 5월 28일부터 같은 해 연말까지 일본의 침입은 24회에 이르는데, 이를 분석해보면 수산시험선 또는 조사선에 의한 침입(6회)과 일본 정부의 행정선 또는 순시선에 의한 침입(17회)으로 나눌 수 있다.²⁰⁾ 가장 먼저 독도를 침입한 것은 시마네 현 수산시험선 ‘시마네호(島根丸/63톤)’였는데, 목적은 독도에 어로 활동을 하던 우리 어민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시마네현 등에 보고하는 것이었다.

독도에서 한국 어민들이 행하고 있는 어로활동에 대해 일본 해상보안청은 “독도 주변 해역의 밀항·밀어 단속 특명”을 내렸고, 6월 26일 오후 18시에 오

18) 外務省アジア大洋州局北東アジア課(2008.03.) 「竹島問題の理解するための10のポイント」

19) 정병준(2012) 「1953~1954년 독도에서의 한일 충돌과 한국의 독도수호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pp.389-450., 박병섭(2014) 「1953년 일본 순시선의 독도 침입-해상보안청의 1차 자료 분석」 『독도연구』 17호, pp.203-241., 박병섭(2015) 「광복 후 일본의 독도침략과 한국의 수호활동」 『독도연구』 18호, pp.77-134.

20) 앞의 논문, 박병섭(2014) pp.223-230.

키를 출항한 해상보안청 순시선 ‘구즈류(くずりゆ)/270톤’와 ‘오키(おき/270톤)’는 27일 새벽 03시 30분에 독도에 도착했다. 새벽을 기다리며 독도를 일주한 뒤 보안관 25명, 경찰관 3명, 시마네 현 관리 2명, 총 30명이 보트를 타고 05시 55분에 독도에 불법 상륙했으며, 약 2시간 독도를 체류한 뒤 07시 40분에 순시선으로 돌아갔다.²¹⁾

일본 순시선의 임검반은 2시간가량 독도에 머물면서 한국 어민 6명에게 심문과 퇴거 명령을 내린 것 외에, 1950년 6월 경북도가 건립한 ‘독도조난어민위령비’를 필사하고 독도에 일본령임을 표시하는 표목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일본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독도 영토표목이다. 이 표목은 시마네현이 미리 준비한 것으로 영토 표목 2개와 경고판 2개를 동도의 ‘독도조난어민위령비’ 부근에 세웠다.

표목은 길이 270cm,²²⁾ 폭 15cm에 “시마네현 오치군 고카무라 다케시마(島根県穂地郡五箇村竹島)”라고 묵서(墨書)로 표기한 것이었다. 경고판에는 시마네현 명의로 “다케시마(연안도서 포함) 주위 500m 이내는 제1종 공동어업권(해조패류)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무단 채취를 금함”²³⁾라고 썼고, 다른 하나에는 해상보안청 명의로 “일본국민 및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외국인은 일본정부의 허가없이 영해(도서해안 3리 이내)내의 출입을 금함”²⁴⁾라고 썼는데, 이 해상보안청의 경고판에는 일본 글자 히라가나 부분에 한글로 토를 달았다. 경고판은 가로 60cm, 세로 35cm, 받침대 포함 총 높이 45cm, 두께 5cm의 규격이었으며, 1950년 6월 경북도가 건립한 ‘독도조난어민위령비’를 포위하는 모양으로 세웠다.²⁵⁾

일본의 독도 침입 사실은 당시 독도에서 조업을 하다가 일본인들의 심문을 받았던 6명의 한국 어민들에 의해 울릉군에 알려졌다. 울릉군이 경상북도와 중앙정부로 보고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먼저 경북 경찰국은 7월 3일 일본이 세운 1차 영토 표목을 철거했다.²⁶⁾ 또한 한국 국회는 7월 8일 일본 관헌이 독도

21)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的研究』古今書院、p.265.

22)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편, 앞의 책에는 표목 길이를 230cm로 기록하고 있고, 川上健三의 위의 책에는 270cm임.

23) 注意：竹島(沿岸島嶼を含む)の周囲五百米以内は第一種共同漁業権(海藻貝類)が設定されてゐるから無断採取を禁ずる<島根県>

24) 注意：日本国民及び正当な手続きを経た外国人以外は日本政府の許可無くして領海(島根沿岸三俣)内の立入を禁ずる

25) 前掲書、川上健三(1966) p.271,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2012) pp.60-61.

를 불법 침입한 사실을 격렬히 규탄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평화선 침해 방지 등 적극적인 조치로 독도에 대한 한국 어민의 출어를 충분히 보장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상북도 의회도 7월 10일 일본의 야만적 행위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며 일본의 도발에 적극 대응했다.

일본이 세운 1차 영토 표목이 한국 경찰에 의해 철거되었음은 AP통신을 통해 일본에도 전달된다. 일본은 7월 12일 해상보안부 순시선 ‘헤쿠라’를 독도에 파견했고, 이때 독도 침입을 감시하고 있던 울릉 경찰에 의해 충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²⁷⁾ 일본 순시선이 충격을 받은 사실에 대해 일본 정부는 외무성을 통해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8월 3일에 또다시 독도에 순시선 ‘헤쿠라’를 파견하여 독도의 상황을 살핀 뒤, 8월 7일 시마네현은 해상보안부에 위촉하여 영토 표목을 독도에 다시 세운다. 일본은 8월 7일 2차 표목을 설치한 이후, 8월 11일, 8월 31일, 9월 17일, 세 차례나 일본의 영토표목 건재 여부를 확인했다.²⁸⁾

일본에 의한 2차 영토 표목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8월 28일 해군함정을 독도에 파견하여 조사를 펼쳤고, 이때 일본이 세운 표목도 발견했다. 2차 표목은 울릉 경찰이 9월 18일 동·서도에 설치된 2개의 표목을 제거했고, 일본은 9월 23일 돛토리(鳥取)현 수산시험선 ‘다이센(大山)’가 독도에 침입하여 2차 영토표목이 철거되었음을 확인한다.²⁹⁾

이후 일본은 또다시 영토 표목 설치를 도모했다. ‘다이센’의 보고를 받은 일본 정부는 10월 6일 순시선 ‘헤쿠라’와 ‘나가라’를 파견하여 세 번째 영토 표목을 독도에 설치했다. 이때 사카이(境) 해상보안부는 시마네현 직원 1명을 동승시켰고, 이전과 같이 동·서도에 각각 1개, 2개의 표목을 세웠다. 일본이 독도에 세운 3차 영토 표목을 제거한 것은 한국 경찰이 아니라 민간단체인 한국산악회였다.

한국산악회는 1947년 최초로 독도 조사를 실시한 이후, 1952년 9월 17일부터 28일 제2차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대’를 파견했다. 당시 조선일보 주필이었던

26) 앞의 책,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2012) p.64.

27) 『讀賣新聞』(1953.07.14.)「政府、韓國に抗議、竹島での發砲事件」

28) 前掲書、川上健三(1966) p.290.

29) 『朝日新聞』(1953.09.20.)「竹島、韓國人の姿なし、島根縣水産試験船報告」

홍종인이 단장을 맡았고, 정부 부처의 지원에 의한 조사였다. 하지만 조사대가 독도 부근에 접근했을 때 미 공군기가 독도에 폭탄을 투하하는 바람에 상륙을 포기했다.³⁰⁾ 한국산악회는 1953년 10월 세 번째로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대’를 파견한다. 10월 15일 다시 독도를 찾은 조사대는 일본이 세 번째 독도에 세워 놓은 영토 표목을 뽑아내고, 그 전 해에 만들었다가 설치하지 못한 화강암 표석을 세웠다. 표석의 앞면에 “독도 獨島 LIANCOURT”, 뒷면에는 “한국산악회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 Alpine Association 15th(Aug.) 1952”이라고 새겼다. 가로 60cm, 세로 46cm, 폭 25cm 규격의 화강암이었다.

<표1> 1953년 일본에 의한 독도 영토 표목 설치 현황

	설치일	이용선박	제거일자 및 제거주체
1차	6월 27일	오키, 구즈류	7월 3일 경북 경찰국
2차	8월 7일	해쿠라	9월 18일 울릉 경찰
3차	9월 6일	해쿠라, 나가라	10월 15일 한국산악회
4차	10월 23일	나가라, 노시로	'54. 5월 18일 해양경찰대

1953년 5월 28일부터 독도에 침입하기 시작한 일본은 세 번째 영토표목을 설치하기까지 10차례 독도에 침범하였다. 이 모두가 독도의 상황을 살핀 뒤 영토표목을 설치하기 위함이었고, 영토 표목 설치 이후에는 영토 표목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며, 독도가 일본령임을 확고히 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한국은 이를 철거했고, 3차 때에는 일본 표목의 철거에만 거치지 않고 한국령임을 알리는 표석까지 설치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산악회의 독도 입도 소식은 10월 12일 부산방송을 통해 미리 알려지게 되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14일 ‘나가라호’를 독도에 파견하였고, 한국 감시선을 발견했다. 이때 한국 감시선 905호(약400톤)은 “독도 조사차 왔다. 평화선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했다. 일본은 10월 17일 독도초계 순시선 ‘나가라호’에 쓰지 마사노부(辻正信)중의원 태우고 독도 현황을 조사했다. 이때 “10월 6일에 세운 영토표목은 없었고, 동도 정상 등지에 3개의 깃대가 있었으며, 서도 부근에는 3개의 측량표석이 있었다.”고 보고했다.³¹⁾

10월 21일 일본의 수산시험선 ‘시마네호’는 독도에 침입하여 일본의 영토표

30) 『조선일보』(2020.05.10.) 「이선민의 독도이야기」

31) 田村清三郎(1965) 『島根県竹島の新研究』[復刻版]島根県総務部総務課、pp.122-123.

목이 철거된 것과 한국이 세운 영토표석을 발견했다. 10월 23일 순시선 ‘나가라’와 ‘노시로’는 초계중에 한국산악회가 설치한 ‘독도’를 철거하고, 네 번째 일본의 영토 표목을 독도에 세웠다. 한국산악회가 10월 15일에 세운 독도 표석이 불과 7일 만에 철거된 것이었다. 일본이 세운 4차 영토 표목은 1954년 5월이 되어서야 철거되었다. 일본 측의 자료에 의하면 1954년 5월 3일 오키 어업조합이 독도에 불법 침입하여 미역, 진북, 소라 등을 채취했을 때까지 여전히 서 있었는데, 5월 23일에는 철거된 상태였다.³²⁾ 일본에 의한 제4차 독도 표목이 이듬해까지 독도에 서있었던 것은 10월 23일 이후 우리 국민이나 경찰이 기상사정 등으로 독도에 상륙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3.3. 독도에서 사라진 일본령 표목

한국 정부는 1953년 6월 27일 일본이 독도에 영토표목을 처음 설치할 때부터 대응책을 논의해 왔다. 1953년 7월 8일 외무부, 국방부, 법제처, 내무부 국장급으로 구성된 ‘독도문제에 관한 관계관 연석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³³⁾ 이 회의에서 4가지 주요사항이 의결되었는데, 첫째 등대 설치, 둘째 해군함정 파견, 셋째 해군수로부의 측량표 설치, 넷째 역사적·지리학적 조사 등이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독도 수호정책들이 추진되었다. 내무부는 일본령 표목을 제거했으며, 외무부·교통부·국방부 등은 독도에 등대, 측량표 등의 설치를 추진했다. 독도에 영구시설물 설치 사업은 1953년 7월 이래 한국 정부가 추진한 가장 중요한 독도 수호정책 중의 하나였다.³⁴⁾

한편, 한국산악회가 세운 독도표석을 1953년 10월 23일 일본이 제거하자 내무부는 관계부처에 철거된 한국령 표석을 독도에 재건하라고 지시한다. 표석 설치 는 경북도가 담당하고 표문(標文)은 한글로 표기할 것을 주문했다.³⁵⁾ 이에 따라 내무부와 경북도 간에 독도 표석 설치의 기본적인 큰 틀이 마련되었고, 경북도

32) 前掲書、川上健三(1966) p.271.

33) 앞의 책,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2012) p.64.

34) 앞의 논문, 정병준(2012) p.419.

35) 경상북도(1953.11.) 『독도측량표 설치의 건』 「독도표석설치계요」(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 BA0852071)

- 내무장관이 지시한 측량표는 「조선토지측량표령」에 규정된 측량표가 아닌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내외에 천명할 수 있는 유행적인 증거로서의 표석을 의미하는 것임
- 표석 설치를 위한 선박운행, 경비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중앙당국이 설치를 이행하여야 하나 긴급을 요하므로 우선 경상북도에서 설치할 것
- 표석의 표문은 한글로 표시할 것

에 의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다. 당시의 계획서를 살펴보면 1953년 11월 20일 건립을 목표로하였으며, 표석의 재질은 견고한 시멘트로 제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계획은 동절기 동해안의 높은 파도와 폭설 등과 같은 기상악화로 인해 거둬 연기되었다. 시마네현 자료에 1954년 1월 20일 경북도가 독도에 표석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³⁶⁾ 이때는 기상 사정으로 독도에 입도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자료를 보면, 1954년 1월 18일 표석 건립을 위해 포항에 도착한 경북도의 내무국 직원은 19일 표석과 자재를 경비선인 ‘직녀호’에 선적 후 울릉도로 출항하였으나 거센 풍랑과 강우로 인해 회항하였다.³⁷⁾ 회항 후 울릉군수에게 작업 가능성 여부를 조회하고 당시 제작한 표석이 지나치게 거대하여 독도까지 운반 및 설치작업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에 따라 표석의 크기 축소가 결정되었다.

축소된 표석과 자재를 선적한 후 26일 출항하였으나 선박의 고장으로 또다시 회항하였고, 1월 30일 포항을 출항하여 31일 울릉도 도동항에 표석이 도착한다. 그러나 독도로 운반하는 것은 또다시 연기되고, 표석의 건립은 기상악화 호전되는 계절로 잠정 연기되었다. 이후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불법 침입에 대응하기 위하여 1954년 8월 1일 독도 경비의 강화를 위한 독도 경비대 초사 건립이 결정되었으며, 잠정 연기되었던 표석 설치가 초사 건립과 함께 진행되었다.³⁸⁾

53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에 의해 추진된 독도 표석 설치의 여러 우여곡절 끝에 54년 8월 24일 독도 경비초사와 함께 건립되었다. 1953년 11월 건립을 목표로 한 독도 표석은 울릉도와 독도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연기를 거듭한 끝에 1954년 8월에야 완성을 본 것이다. 완성된 독도 표석의 앞면에는 ‘大韓民國慶尙北道鬱陵郡獨島之標’라고 쓰고, 좌측 하단부에 ‘慶尙北道建立(경상북도건립)’이라고 쓰여 있다. 가로 63cm, 세로 126cm, 폭 21cm 규격의 표석이다.

일본의 의해 53년 10월 23일에 설치된 제4차 영토 표목은 한국 해양경찰대 경비선이 1954년 5월 18일 독도에 입도하면서 철거했으나, 일본 선박의 독도 해역 침범 및 독도 불법상륙은 1954년까지 지속되었다. 1954년 8월 23일 해상

36) 前掲書、田村清三郎(1965) p.123.

37) 『독도표석 건립에 관한 건』(1954.02.10.) 「복명서」(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 BA 08 2403 -1)

38) 『독도표석 건립에 관한 건』(1954.08.09.) 「독도표석 건립의 건(무전안)」(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 BA082403 -3-1)

보안청 순시선 ‘오키호’는 독도에 상륙한 한국 관헌으로부터 약 400발의 총격을 받았다.³⁹⁾ 이 가운데 한 발이 선박 우측 전지 배기관을 관통한 외에 선박 부근에 총탄이 다수 날아왔지만 승조원은 다치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은 8월 26일 주일한국대표부에 항의했고, 한국 외무부는 8월 28일 일본측 항의를 거부하고 일본의 독도 상륙은 한국 영해 내로 침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⁴⁰⁾ 이런 총격전 끝에 1954년 8월 31일 한국은 국무회의에서 독도에 경찰관 상주를 결의했다.⁴¹⁾ 한국 정부의 다음 조치는 독도에 등대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한국은 1954년 5월 이후 본격적으로 독도수호 활동에 나섰다. 일본의 영토 표목을 철거하고, 다시는 일본이 철거하지 못하도록 화강암, 시멘트 등의 표석을 설치함으로써 독도 수호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독도 표석을 설치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1954년 6월 17일 내무부 훈령에 따라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독도를 지키기 위해 해안경비대를 파견한다. 이에 일본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한일 간의 긴장 국면이 계속되었지만, 한국은 보다 강력하고 항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954년 7, 8월 독도 경비대의 상주를 결정했고, 경비대가 거주할 막사 건설을 비롯하여 등대와 무선 통신시설을 설치한 것이다.

또한 1954년 8월 10일 독도에 등대를 설치한 한국 정부는 8월 23일, 이 사실을 한국 주재 각국 외교 대표에게 통보했다. 이어서 독도에 상주 경비대와 경비선을 파견했으며, 등대·무선통신시설 등의 영구시설을 설치 완료했다. 이에 대해 일본의 반발은 거셌고, 54년 9월 25일에는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의했지만, 한국은 이를 일축하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확고히 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53년 6월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령임을 표식하는 표목을 독도에 설치한 이후 4차례나 독도에 표목을 세웠지만, 그때마다 한국 정부가 이를 제거하고 한국령임을 알리는 독도 표석을 설치했다. 영토 표석이 반드시 영토의 한계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본정부가 독도에 4차례나 일본령 표석을 세웠지만, 그것이 영구히 사라진 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39) 앞의 책, 川上健三(1966) p.266.

40) 『読売新聞』(1954.08.29.)

41) 『読売新聞』(1954.09.01.)

4. 나가기

2005년 3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응하여, 경북도는 같은 해 8월 1950년대 독도에 세워졌다가 멸실된 독도의 표석 3점을 복원했다. 본고는 경북도가 복원한 3점의 독도표석을 중심으로 1950년대의 독도 상황과 한일 간에 독도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 그리고 전개양상을 살펴보았다.

독도에 영토 표석을 먼저 설치한 것은 1947년 8월 한국이었는데, 이 최초의 영토 표목은 일본의 독도 불법침범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조치결과로 나타난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영토 표목을 설치함으로써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대내외에 분명히 했다. 다음으로 1948년 6월 8일에 미 공군에 의한 독도 폭격 사건의 희생자를 위로하는 ‘독도조난어민위령비’가 1950년 6월 8일 경북도에 의해 건립되었다. 이는 한국의 영토에서 한국 어민, 어선들이 재난을 당했을 때 한국 정부가 보상 주체인 미 군정에게 진상 요구를 함으로써 독도가 한국령임을 알리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독도를 둘러싼 공방전은 1953년 5월이후 본격화되었다. 특히 일본은 같은 해 6월 27일 독도에 불법 상륙하여 영토 표목을 설치한 이후, 4차레나 영토 표목을 설치하며 독도를 일본령으로 공식화하려 했지만, 한국은 이를 제거하고 대한민국 영토표석을 설치하며 독도수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 독도에 일본령 표목이 영구히 사라진 배경에는 한국의 적극적인 태세를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 대한민국 영토 표석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1954년 8월 10일 독도에 등대를 설치했다. 8월 23일에는 이 사실을 한국 주재 각국 외교 대표에게 통보했고, 이후 미국의 항로도에도 게재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독도를 한국령으로 가시화했으며, 안으로는 독도에 상주 경비대와 경비선을 파견하고, 등대·무선통신시설 등의 영구시설을 설치 완료하는 등 독도를 관리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54년 9월에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의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며 외교 공방전을 적극적으로 펼쳤지만, 독도에 경비정을 파견하거나 무력을 행사하는 일은 없었다. 이는 당시 일본이 처한 상황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써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과 연관이 깊다. 1953년 당시의 미국은 국제적 영토분쟁에서 공개적으로 일본 편에 선다는 것

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의 주장대로 독도가 문제가 된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일본은 자의든 타의든 그들이 독도에 4차례나 설치한 일본령 표목을 지키지 못했다. 1954년 이후 현재까지 독도에 일본령 표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영토 표식이 영유권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할지라도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태우(2011.06.) 「1948년 미 공군에 의한 독도폭격의 전개양상과 군사정책적 배경」 『동북아역사논총』 32호, 동북아역사재단, p.405.
- 박병섭(2014.12.) 「1953년 일본 순시선의 독도침입-해상보안청의 1차 자료분석」 『독도연구』 제17호, 영남대학교, pp.203-241.
- _____ (2015.06.) 「광복 후 일본의 독도 침략과 한국의 수호활동」 『독도연구』 제18호, 영남대학교, pp.77-134.
-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2012) 『독도문제개론』 외교통상부, p.43, 64.
- 이정훈(2005.07.19.) 「자연보호 독도, 역사가 버려져 있다」 『주간동아』 494호, 동아일보사, pp.92-94.
- 정병준(2010) 『독도 1947』 돌베개, p.139, 168.
- _____ (2012) 「1953~1954년 독도에서의 한일충돌과 한국의 독도수호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p.412.
- 정재민(2013)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나남, pp.170-179.
- 지철근(1979) 『평화선』 범우사, p.97.
- 최장근(2013) 『일본 의회 의사록이 인정하는 ‘다케시마’가 아닌 한국영토 독도』 제이엔씨, pp.69-82.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9) 『개정정보판 독도사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293, 364.
- 홍성근(2015.06.) 「평화선 선언과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에 대한 법·정책적 이해」 『독도연구』 제18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p.186-189.
- _____ (2020.06.) 「1948년 독도폭격사건의 인명 및 선박 피해 현황」 『영토해양연구』 19, 동북아역사재단, pp.44-45
- 홍순철(1997) 『이 땅이 뉘 땅인테』 도서출판 해안, p.16.
- 경상북도(1951) 「독도에 관한 조사의 건」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BA0182403-1)
- 경상북도(1953.11.) 『독도측량표 설치의 건』 「독도표석설치개요」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BA0852071)
- 국회사무처 「제1회 국회속기록 제11호」 (1948.06.15.) 『제헌국회속기록(1948.4.30.-1948.9.8.)』 제1권, pp.145-150.
- 『독도표석 건립에 관한 건』 (1954.02.10.) 「복명서」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BA082403-1)
- 『독도표석 건립에 관한 건』 (1954.08.09.) 「독도표석 건립의 건(무전안)」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BA082403 - 3-1)
- 『서울신문』 (1947.08.22.)

- 『서울신문』 (1948.06.18.)
『조선일보』 (1948.06.19.)
『조선일보』 (2020.05.10.) 「이선민의 독도이야기」
高秉雲(1977.06.) 「獨島は朝鮮固有の領土である」 『統一評論』 p.162、166.
梶村秀樹(1978.09.) 「竹島＝独島問題と日本国家」 『朝鮮研究』 182、日本朝鮮研究所、pp.27-29.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的研究』 古今書院、pp.265-266、p.271、290.
田村清三郎(1965) 『島根県竹島の新研究』 島根県総務部総務課、pp.122-123.
内藤正中(2005.06.) 「竹島は日本固有領土か」 『世界』 岩波書店
堀和生(1987.03.) 「1905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会論文集』 第24号、朝鮮史研究会、p.112.
孫崎亨(2012) 『日本の国境問題』 ちくま新書、pp.144-149.
外務省アジア大洋州局北東アジア課(2008.03.) 「竹島問題の理解するための10のポイント」
『朝日新聞』 (1953.09.20.) 「竹島、韓國人の姿なし、島根縣水産試験船報告」
『讀賣新聞』 (1953.07.14.) 「政府、韓國に抗議、竹島での發砲事件」
『読売新聞』 (1954.08.29.)
『読売新聞』 (1954.09.01.)

논문 투고 일자 : 2020. 09. 30.

논문 심사 일자 : 2020. 10. 26.

게재 확정 일자 : 2020. 10. 28.

<要旨>

1950年代の独島を巡る韓日間の紛争とその結果
－「独島標石」を中心として－

李笑利

2005年3月、日本の島根県議会は「竹島の日」条例を制定し、独島が日本の領土だという主張を行った。これに対し、独島を管轄する韓国慶尚北道は同年8月15日、光復60周年を迎え、過去に独島に立てられたが、滅失された独島標石を復元し、再建立したのである。この時、慶尚北道が復元した3点の標石は1950年代に建立された「独島遭難漁民慰霊碑」、「韓国山岳会の独島標石」、「大韓民国の領土標石」であった。

本稿は慶尚北道が復元した3点の標石を中心としていつ、どのような理由で設置されたか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その結果、1953年6月以後、日本は独島標識を4回も立てたのだが、韓国は日本が独島に標石を立てる度にこれを取り除き、1954年8月には「大韓民国の領土標石」を設置した。以後、独島には日本の領土標石は永久に去ってしまったし、韓国の領土標識が残っているのみである。これは韓国の独島の実効的支配を見せる一例である。

Disputes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1950s surrounding Dokdo and the result
－Focusing on the territorial tombstones in Dokdo－

Lee, So-Ri

Japan has publicly claimed its sovereignty over Dokdo since its Shimane Prefecture adopted the “-Takeshima Day-” Ordinance in March, 2005. In response, Gyeongsangbuk-do, which has jurisdiction over the island, decided to restore and rebuild territorial tombstones in Dokdo that were destroyed in the past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Korea’s liberation on August 15 of the same year. Three tombstones were restored by the Province, namely the ‘-Dokdo Island Memorial Tombstone of Shipwreck Victims-’, the ‘-Memorial Stele by Korea Alpine Club-’, and the ‘-Korean Territorial Tombstone-’ which were erected in the 1950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three tombstones and stele that were rebuilt by Gyeongsangbuk-do, focusing on the year of establishment, process, and reason for erection. The study found that Japan had installed its territorial tombstones four times since June, 1953, and Korea removed them one by one and established the ‘-Korean Territorial Tombstone-’ in August, 1954. Japan’s territorial tombstones were permanently eliminated and only the Korean territorial tombstone was left on the island, which serves as a testament to the effective occupation of Dokdo by Korea.